

#### [서식 예]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(은행잔고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)

#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

신청인(채무자)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채권자) □ □ □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주식회사 △△은행

서울 △△구 △△길 △△번지

대표이사 △△△

## 신 청 취 지

피신청인이 신청한 00지방법원 2013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. 00. 00.자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.

## 신 청 이 유
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13. 00. 00.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



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, 제3채무자에게 2013. 00. 00. 일에 송달되었습니다.

- 2. 그런데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이 위 채권을 압류하기 이전에, 해당 예금통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7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3. 「근로기준법」제86조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,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에 따라 신청인의 예금 통장에 있는 금원 중 재해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은 압류할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하므로, 부득이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.

### 소 명 자 료

1.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 1통

1. 재해보상금 지급받는 통장사본 1통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(별지)

## 채권의 표시

청구금액: 0000000원

신청인이 △△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

## 계좌내역

과 목:저축예금

계좌번호: 000-000-0000

계좌개설지점: △△△지점. 끝.



제출법원	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
제출부수	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  관 련 법 규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, 제2항
불복절차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, 제196조제4항)
및 기간	・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
비 용	··인지액: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
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의 범위변경	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1996. 12. 24.자 96마1302, 1303 결정 참조),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579조의2(현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)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있다(대법원 1999. 10. 6. 자 99마4857 결정 참조) ·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,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) ·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.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.(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)